

제1장 품종보호제도의 의의

가. 종자산업법의 개요

1) 법 제정취지

종자산업법은 국제수준의 종자 및 품종관련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1995년 12월 6일에 제정공포(법률 제5024호)되어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농작물 종자법과 종표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기 위함이며 종자정책에 있어 3대기능인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품종성능관리」, 「종자보존」 제도를 도입하여 종자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식물신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을 이행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및 이에 따른 종자보존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종자제도의 선진화 및 종자산업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한다.

2) 법 적용의 대상

기존의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표관리법에 의한 관리 대상식물은 48개 식물을 국한되었으나 이 법에서는 적용 대상식물이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모든 종자로 확대되었다.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 1 -

생산을 위한 모든 식물의 종자가 종자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종자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화훼류, 약용작물 등의 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자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나. 품종보호제도의 의의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은 육성자에게 그 품종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의 품종이 국내에 출원됨으로써 우수한 육종재료 및 유전자원의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국내 품종육성의 활성화 및 육종수준이 향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출원 및 등록종중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유사품종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품종이 해외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화획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

표 1.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대상식물(예시)

식량작물	19	벼,감자,메밀,고구마,옥수수,보리,밀,귀리,호밀,라이일(트리티케일),팥,누두,완두,강낭콩,유부초,기장,수수
채소작물	33	무,배추,라초이(청경채),갯,쪽지,근대,아욱,춘재,양배추,당근,상추,녹색꽃양배추,양배추,케일,콜라비(순무양배추),지커리,렌다이크,셀리리,파슬리,참외,수박,멜론,가지,순무,토마토,파,양파,오이,호박,시금치,박(대목용박),부추,고추
화훼작물	99	장미,렌지,종꽃,초왕꽃,접초왕꽃,메발톱꽃,페튜니아,금어초,태이지,스트로키,스틸라덴,리시안thus,봉선화,멜드라미,백일초,한련화,알리스아게라티,팬타고늄,글록시니아,칼라,튤립,튤립,글라디올러스,눈꽃박봉아이영점화,멜피니움,다달리아,백합,안개초,튤목스,스타티스,원추리류,옥잠화,갈랑초,국화,극작조화,물망초,시데네,금잔화,고대지아,셀도레이,조개나물,작약,기비화,알립알스트로메리아,히아신스,상사화류,아이리스알리움,알립알스트로메리아,히아신스,상사화류,아이리스알리움,프리미라리아,무스카리,오니소갈럼,아버틸리스,캐나리,무궁화,크로커스,원목화,아메도라,프리자,가우라,금계국,멜드르비움,나도프란,풍란,세우란,카틀레야,온시다움,비모란선인장,포인세티아,팔레놀리스,군자란,동백,캐네이션,보우화(춘란),한란,산화선인장,인도고무나무,필로덴드론,밀란드시아,심비디움,란타나,아레카나무,아디안텀,오스문다,페라나눔,페로미아,레벨이그스,스마닥선인장(백년초),틀레마리스,수국,베고니아,안스리움,리아트리스,유로프비히펠레리카폴리아,알로카시아,엑사칼
과수작물	11	사과,배,복숭아,포도,유자,산딸기,키위프루트(참다래),단감,자두,배설,살구
버섯	6	느타리버섯,양지버섯,진흙버섯,풍충하초,양송이,팽이,
특용작물	36	토란굴,닭기,황기,원전굴(경궁),만삼,원당기(해당귀),디덕,도라지(경절),감초,참계,망종,인삼,구기자,결명자,식방죽,지황,구릿대(백지),시호마(산약),하수오,맥사,강황,황금,홍화(잇꽃),도란(숙단),오미자,삼주(백출),독활(당두릅),황부지,기보,유채,두충,담배,맥문동,들깨,적자
사료작물	5	볼레그스,오지드그래스,라이그래스,레드클로버,알팔파

- 4 -

표 2. 국립산업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대상식물

구분	품종보호 대상식물
채소	다당양이, 협고, 참나물, 개고사리
화훼	가느쇠고사리, 각시제비꽃, 갈대, 구슬방아, 구절초, 금강초롱꽃, 금방망이, 기린초, 꽃향유, 꿀풀, 평의다리, 평의비름, 남산제비꽃, 대사초, 동강활미꽃, 동자꽃, 둥근일월비름, 딱지꽃, 땅재송화, 만병초, 말벌도리, 모데미풀, 물싸리, 물결길이, 미역취속, 바위미나리아재비, 바위재송화, 백리향, 백선, 백화동, 벌노비꽃, 벌의귀, 복가지, 봉의꼬리, 부처꽃, 비자란, 비짜루, 백옥다리, 산수국, 산수유, 산자고, 살갈퀴, 석갈퀴, 칠명초, 삼기린초, 천백리향, 송대, 수수꽃다리, 솔레메이꽃, 얇은부채, 알록제비꽃, 애기기린초, 애기나리, 억새, 영인초, 황대, 유산나물, 유산나물, 은방울꽃, 잔디, 조외대, 진달래, 자초, 왕취속, 천남성, 천수국, 큰꽃오소리, 큰황의비름, 큰두루미꽃, 큰애기나리, 큰앵초, 두구꽃, 한라구절초, 해국, 흰호색, 흰제비꽃, 왕나루, 꽃망초류, 누리장나무, 눈소화, 등나무, 버드나무속, 복주머니란, 석왕아카시아, 안개나무, 애기도라지, 흰계수, 조팝나무, 피마자꽃, 꿩토스도립(존나무), 흰떡잎꽃, 장대나무, 국수나무, 도깨비부채, 등글나무, 땅비싸리, 말민대, 머느리배롱, 모감주나무, 방울꽃, 민초리, 붓손나무, 위망나무, 지양등글나무, 애기꽃, 오이꽃, 장대, 주스치기마, 종산, 국수나무, 홍가지나무
특목	가시오가피, 각시등글대, 고본, 고비, 곤달비, 광취, 관중, 들나물, 들단풍, 동의나물, 등글대, 무너등글대, 물레나무, 땅아꽃, 배호장, 익모초, 길경이, 천마, 고나물, 삼지귀영초
산림	가문비나무, 가시나무, 가죽나무, 개암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솔, 구상나무, 굴참나무, 개마귀참나무, 개마귀목나무, 광장나무, 낙수종, 노루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대풍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대추나무, 배롱나무, 바가목, 재자나무, 물푸레나무, 백달나무, 밤나무, 비좁나무, 밤나무, 백오목, 병꽃나무, 병아리꽃나무, 분비나무, 뽕나무, 사스레피나무, 사시나무, 산뽕나무, 산사나무, 산초나무, 산나무, 산수리나무, 잣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나무, 아까시나무, 아재나무, 오갈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유나무, 이데리포브라, 일본잎갈나무, 자귀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쪽백나무, 참죽나무, 제전목, 조피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편백, 할박꽃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호랑가시나무, 화살나무, 황백나무, 황칠나무, 회화나무
버섯	나도송이, 목이버섯, 복령, 뽕나무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 장수버섯

- 5 -

다. 품종보호 대상식물

품종보호 대상식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종자산업법 시행 초년도(1997. 12. 31)에는 우리나라의 제반여건 및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27개 식물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2009년 5월 1일부터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등을 제외한 모든 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식물을 확대하였다. 또한, 품종보호 대상식물을 농업용과 산림용으로 구분하고 국립종자원과 국립산업품종관리센터에서 각각 품종보호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 3 -

라. 품종보호를 위한 요건

UPOV 협약에서는 품종보호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의 5가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도 품종보호를 받고자 출원한 품종이 출원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수수료의 납부 및 5가지 품종보호요건을 갖추면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

1) 신규성(Novelty)

신규성의 기준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에는 6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단, 어떤 품종이 육성자의 허락 없이 상업화되었거나 행정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구별성(Distinctness)

신품종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비교하여 한 가지 이상의 특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성이란 농업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품종구별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형태적 특성을 말한다.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등록된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을 말하며 품종보호 출원이 되었거나

- 6 -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신청한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 본다. 그러나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 보지 않는다.

구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잎이나 꽃의 색깔과 같은 질적형질은 육안관찰 또는 칼라차트(RHS color chart)에 근거하여 출원품종의 특성발현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한 계급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특성은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두 계급 이상 차이가 있어야 구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균일성(Uniformity)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품종은 돌연변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흔히 이행주라고 표현하며 어떤 품종이 동질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종 내에서 이행주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행주의 허용범위는 번식방법 즉 자가수분, 타가수분, 주로 자화수

- 7 -

분, 영양번식 등의 방법에 따라 식물별로 이행주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4) 안정성(Stability)

품종의 안정성이란 반복적인 증식 후에도 원래의 중요한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말한다. 새로운 품종은 반복적 증식 후 또는 1대 잡종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에도 육종자가 정의한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후에도 품종보호권자가 품종의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심사와정에서는 구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품종의 상업과 과정에서는 균일성과 안정성이 없으면 이용자인 농업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 8 -

5) 품종명칭

품종명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절된다. 품종명칭은 국제적으로는 1품종 1명칭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 간에 무역을 위해 품종명칭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래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음역(Transliteration)을 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될 수 없는 품종명칭은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이거나, 해당 품종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이거나, 동일 식물 내에서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등을 말한다.

- 9 -

제2장 출원 품종의 심사

가. 출원공개

가) 출원공개 제도의 목적

출원공개 제도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된 품종에 대해 출원 내용을 사회 일반에 알리는 제도이다. 출원공개 제도의 목적은 사회일반에 출원사실을 알리고 일반인들로부터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미처 찾지 못한 거절이유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받아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반인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다.

출원공개 방법은 품종보호 출원품종을 출원등록부에 등록하고 품종보호 출원내용의 개요를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출원공개를 하게 된다. 공개 내용은 출원번호, 출원인(육성자 포함), 품종명칭, 우선권주장사실, 품종의 특성개요 등이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이유를 들어 품종보호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정보에 대한 증거와 함께 해당 정보를 심사관에 제공할 수 있다.

나. 출원공개 효과

출원공개를 하게 되면 임시보호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출원공개가 된 시점부터 등록되는 시점사이, 즉 품종의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 사이에 출원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두는 것인데 이를 임시보호의 권리라고 한다.

나. 출원품종의 심사

신품종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배심사는 자체 재배시험, 현지시험, 위탁시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진다.

심사의 방법으로서 재배심사는 1개 장소에서 2년 또는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을 통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 방법이나 기준은 식물별로 작성된 "식물별 특성조사요령 및 기준"에 따르며 이를 기준은 UPOV에서 제정한 기준을 준용하거나 UPOV에 기준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용한다.

* UPOV 명칭의 약어는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란 프랑스 이름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고,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다.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행정 및 법적인 차원과 기술적인 심사를 종합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는 서류심사와 기술적인 심사로서 재배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류심사로서는 신규성과 품종명칭에 대해 심사하게 되고, 재배심사는 재배시험을 통해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다. 출원의 거절 결정

심사 결과 품종보호를 출원한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거절을 하는데 거절결정을 할 경우는 품종보호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이 거절이유를 반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만일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는 공고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별첨> 거절 이유 예시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제외자가 품종보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경우
-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아직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출원품종이 품종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출원인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서 육성자이거나 그 승계인이거나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 제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 선출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 동일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품종보호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출원한 경우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자인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 기타 조약에 위반된 경우

<별첨>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절결정의 이유에 따라서는 최초로 출원했던 사항에 관하여 출원서를 보정할 수도 있다.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된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라. 품종보호의 결정 및 등록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게 된다. 품종보호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품종보호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이 품종보호요건을 납부하고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품종보호의 권리가 성립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될 때는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을 포함하여 등록된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 알리게 되며 품종보호권자에게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등록설정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며 과수 및 임목의 경우는 25년이다. 일본은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해 2005년도에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을 20년에서 25년으로, 수목의 경우는 25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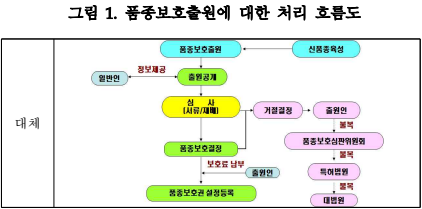


표 3.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2010. 12. 31. 현재)										
구 분		계 (구상비)	'04이전	'05	'06	'07	'08	'09	'10	
출원	계	5,040	1,948	533	421	527	490	547	574	
	소계	3,711	1,333	297	321	383	416	481	480	
	직무	2,064	883	158	139	203	198	248	235	
	민간	1,647	450	139	182	180	218	233	245	
	국 외	1,329	615	236	100	144	74	66	94	
등록	계	3,385	1,118	311	273	424	407	399	453	
	소계	2,405	783	171	216	252	279	331	373	
	직무	1,538	609	108	144	153	155	161	208	
	민간	867	174	63	72	99	124	170	165	
	국 외	980	335	140	57	172	128	68	80	

제3장 품종명칭

가. 품종명칭의 사용

다음 품종은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대상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대한민국에 A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다음 다른 나라에 B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국가 간 무역을 위해 품종명칭을 등록하는 경우는 원래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음역(Transliteration)을 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음상으로 다른 나라에 등록된 품종명칭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른 명칭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나.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1)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는 품종명칭

-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이거나,
-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으로 표시한 품종명칭이거나,
- 해당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거나,
-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이거나,
-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인 경우이다.

2) 품종명칭등록의 선출원 원칙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면저 출원한 자에게만 품종명칭을 등록할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품종명칭등록출원을 받고자 하는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 품종명칭 등록출원 : 품종보호출원서, 품종목록등제신청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품종명칭등록을 출원한 것으로 본다.
-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등록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한다.
-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한다.
- 거절 시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명칭을 제출토록 한다.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마. 품종명칭의 취소

○ 취소사유

- ①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② 품종명칭등록요건에 위배된 품종명칭에 해당되는 경우
- ③ 선 출원 원칙에 위배된 경우
- ④ 해당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 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 취소절차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도록 한다.

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품종명칭등록출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품종명칭등록출원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피어쓰기 수정)

라.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거절

- ① 품종보호출원 된 품종이 아-법에서 정한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③ 법에서 정한 품종명칭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없는 명칭인 경우,
- ④ 같은 날 동일명칭을 출원한 자간에 협의가 없던 경우,
- ⑤ 품종목록등제신청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품종목록등제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해당된다.

표 4. 품종명칭등록상황 및 거절결정건수
(2012. 12. 31.현재)

구 분	'97~'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합 계	20,557	1,771	1,948	1,606	1,198	1,599	28,679
식량작물	7	2	1	2	2	2	14
원예작물	583	56	84	110	72	78	983
축산물	6,202	736	790	769	540	663	9,720
가축류	4	2	1	2			9
과수류	334	82	77	39	51	58	641
화훼류	12,869	823	918	637	467	738	16,452
특용작물	1						1
사료작물	182	25	28	15	17	15	282
바섯류	158	17	28	11	16	27	257
기타류	4						4

* () 안은 구법(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종자산업법 경과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 품종수임

제4강 품종보호권의 발생, 소멸, 실시

가. 품종보호권의 발생

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품종보호권은 심사관이 품종보호결정 결과를 통보하면 출원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함으로써 법적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되고 지식재산권으로서 품종의 이용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공보에 등록사실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게 되며 품종보호권자에게는 품종보호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식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매년 일정금액의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나. 품종보호권의 소멸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절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보면,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품종보호권의 상속 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을 포기하는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 등이다.

1) 품종보호권의 무효

품종보호권이 무효가 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권리실시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상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품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취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유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 등이다.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서는 이미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육성된 품종에 대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식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성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알려진 품종이란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해 등록된 품종, 산법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 된 품종,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그 품종이 기존의 법에 의해 등록되거나 최초 유통된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이렇게 등록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된 품종은 그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타인에 의해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렇게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국내에서 이미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나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

2) 품종보호권의 취소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취소되는 시점부터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보호품종의 권리가 취소되는 경우를 보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인 균일성과 안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栽培이 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보호품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명칭 등록을 취소한 경우이다.

다. 실시권?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해 전시를 포함한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종보호권자는 실시의 범위내에서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권을 대여할 수도 있다. 실시의 개념은 타인의 행위가 품종보호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 실시의 종류

○ 증식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재종단계 등의 방법을 통해 종자를 늘리는 행위

○ 생산

보호품종의 종자를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할 목적으로 보호품종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

○ 조제

생산된 종자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Coating처리 등을 하는 행위

○ 양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보호품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 대여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보호품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를 빌려주는 행위

○ 수출

국내에서 생산된 보호품종의 종자를 외국에 양도·대여·전시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출행위 그 자체를 실시의 개념 하에서 직접 규제할 수는 없으나 침해품종의 수출은 수출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양도 또는 생산의 개념에 포함시켜 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보호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사용·양도·대여·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전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양도·대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시하거나, 진열해 놓거나, 전시회·박람회에 출품하는 행위

2) 실시행위의 독립성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 각각의 실시행위는 품종보호권의 효력 상 각각 독립적이며, 어느 하나의 실시행위는 다른 실시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들 실시행위의 독립성이라

한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자 갑은 타인인 을에게 보호품종의 종자만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병에게는 그 생산된 종자를 판매만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만일 을이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이에 그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품종보호권 침해가 된다.

3) 소지행위와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는 실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품종보호 된 종자를 양도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앞으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실시권의 설정

1) 품종보호권자의 직접실시

품종보호권자가 직접 자신의 품종에 대한 실시를 하는 방법이며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업을 등록하여야 가능하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는 전용실시권자와 계약으로 실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없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하는 경우는 반

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3) 통상실시권의 설정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계약에 의해 실시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용실시권은 설정범위내에서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이러한 독점적 실시권능은 없으며 단지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점에서 동일범위의 통상실시권이라도 공존이 가능하며 품종보호권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후에도 보호품종을 스스로 실시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으로 분류된다.

제5장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가. 품종보호권의 효력

지역적으로는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하여 받아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역시 상실된다.

품종보호권의 실제적 범위에 있어서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보호품종에 미친다. 그러나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거나 보호품종과 구별이 되지 않는 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부여된 실시권리는 품종보호권자가 가지지 못한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으로 생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제조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의 종자를 이용하여 수확한 산물인지를 모르고 이용한 선량한 가공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확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산물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사과주스를 생산한 업체가 A품종과 B 품종을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나 A라는 품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품종을 구입하여 재배한 후 생산된 산물이나 B라는 품종은 품종보호권자로부터 정상적인 구매관계가 아닌 품종을 이용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첫째는 우선 주스에도 품종보호권이 미칠 것인가?, 둘째는 미칠 경우 혼합된 주스 내용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셋째는 내용물에 화학적 반응의 효과는 어떻게 볼 것인가?, 넷째는 따라서 침해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법 이론적으로는 허락을 받지 않고 생산한 산물이기 때문에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UPOV 1991협약에서는 1978협약과 달리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다. 이는 최근의 품종육성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그 중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및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 기본유래 품종

○ 기본유래 품종이란?

기본유래품종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①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그 조합에 의하여 발현되는 주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②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며,
- ③ 특정 육종방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당해 품종의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

기본유래품종은 주로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등 단순한 유전자원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품종육성을 하였을 경우에 대해 원품종 권리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유용 유전자들 원 품종에 도입하는데 소요되었던 노력이나 많은 비용 그리고 어려움은 유래품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 품종으로부터 유래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해서 유래품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래품종이 원 품종의 주요형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돌연변이에 의한 유래품종인 경우는 언어적 돌연변이가 인위적이었던 자연적이었던 상관이 없다.

○ 기본유래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및 권리자간의 합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을 육종재료로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육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호품종 자체도 육종의 재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은 품종보호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항상 원 품종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유래품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래품종의 정의에 맞지 않으면 유래품종이 아닌 것이다. 유래품종도 품종보호요건에 맞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래품종의 이용

유래품종의 이용에 있어서는 원 품종육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실시할 수가 없다. 이는 유래품종도 원품종 보호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유래품종 육성자는 유래품종의 이용을 위해 원 품종육성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또 제3자가 유래품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 품종 및 유래품종 육성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유래품종에 대한 판단여부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 결정하게 되며 품종 심사 기관이 유래품종을 판단할 기능은 없다.

2)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UPOV 협약에서는 보호된 품종을 양친으로 이용하여 1대 잡종 품종의 종자생산을 하는 경우 양친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협약 제14(5)(iii)에서는 종자생산에 있어 보호품종의 반복적인 이용이 요구되는 경우 즉 보호품종이 양친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호 품종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대잡종 품종의 양친이 품종보호 된 경우 이 품종을 양친으로 이용한 경우 일대잡종 품종에도 양친의 권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잡종의 종자는 보호품종이 반복적으로 이용되어야 종자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협약의 제 14(1)(a)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판매, 유통 및 수입의 경우에도 육 종가의 허락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2) 알려진 품종 중 기 실시하고 있는 영년생 식물 품종

영년생 식물 품종에 대해 무단으로 출원 전에 기 재식한 품종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출원 후에도 수확물인 절화나 과실은 계속하여 생산되고 있는 경우가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종자산업법하에서는 기 알려진 품종의 출원 전 재식에 의해 출원 후 생산되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알려진 품종에 대한 출원 후 자가재종

장미나 사과와 같은 영양번식물이면서 영년생 식물의 경우는 출원 전에 이미 타인에 의해 재식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알려진 품종의 출원 전 무단 실시한 자가 출원 후 생산포장 갱신을 위해 재식된 품종에서 삼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가재종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무단 번식하였고 출원 후 번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타인이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보호 품종을 실시하면 품종보호권 침해가 되며, 침해 시는 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권리 침해 및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나 타인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조치로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해금지권과는 달리 품종보호권 소멸 후에도 행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57조제3항에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종가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1대 잡종 품종을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양친을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양친 중에서도 어떤 양친의 출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품종의 영리외의 목적인 자가소비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인데 취미생활을 위한 재배 또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 자가 소비하는 때, 실험이나 연구를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품종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보호품종도 육종재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품종을 반복 사용하여야만 종자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농민의 자가재종의 경우이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초의 품종을 외국으로부터 계약 하에 도입하여 재배하던 중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에 대한 육종재료로의 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도입 당시 동 품종을 재배하던 중 돌연변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돌연변이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

반대로 출원 전 또는 출원 후 정상적으로 구입한 묘목을 이용한 포장에서 4~5년 뒤 포장갱신을 하기 위해 삼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가재종의 범위로 보아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가재종의 공통적인 규정은 종자가 자신이 수확한 산물로부터 얻은 경우에 한하고 다른 농민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소유 농장에 파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재종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교환,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

○ 손해액의 추정

종자산업법 제86조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대해 특별법 제128조내지 132조를 준용하고 있다. 품종보호권자 등은 침해자를 상대로 그 품종보호권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 금액을 “실시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자기 가 받은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제128조 제2항). 이와 같이 실시료 상당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손해액을 보상받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실시료 상당액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해 자기 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의 액을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또는 그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품종보호권자 또

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때는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출원 전 이미 알려진 품종의 경우는 출원 전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른데 종자번식식물의 경우는 출원 이후는 동 품종을 생산하거나 증식하지 않으면 간단하지만 영양번식 식물 및 영년생 식물의 경우는 그 경우가 다르다.

1) 알려진 품종의 출원 후 권리

알려진 품종에 대해 해당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식물로 지정되고 1년 이내에 출원되었을 경우 출원공개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지만 출원공개 후부터는 권리가 미치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실시할 경우에는 허락이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제13-2조). 또한 기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액이나 협의방법을 정하고

제6장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보호 및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 조정

가.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 보호품종의 실시의무

국가가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는 것은 육성자를 보호하고 일반에게 보호품종을 조속히 공개하여 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품종보호권 실시보고의 의무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국가의 요청에 대해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한다

○ 보호품종의 유지의무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동안 품종보호권설정등록 당시의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품종보호료의 납부의무

품종보호권자는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의 액이 여기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료 상당액은 당해 품종보호권에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료 상당액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실시권을 허용한 적이 없다면 상대방이 판매한 실시품종의 종자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역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채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민법 제76조3).

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중자산업법 제158조의 6(직권조정결정)

중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값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지침(농식품부고시 제2008-8호)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부의 구성과 역할

품종보호 침해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장, 조정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조정부장은 중자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중자위원회 위원장이 조정부장과 협의하여 중자위원 중 관련분야 중자전문가 1인, 변리사 또는 변호사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농업수산물식품부 중자생명산업과 중자제도 담당관으로 정한다.

조정부장의 역할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조정부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 총괄이며, 조정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조정부장이 의뢰한 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간사는

다) 유사성 검정을 위한 수수료 징수

유사성 검정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비용은 제배시험 비용(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및 유전자검사 비용(검사시약 및 인건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정지침(농식품부고시 제 2008-8호) 및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조사요령(국립종자원에규 제50호)

조정부 회의운영 등 조정부장 보조 및 행정업무 처리를 담당한다.

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업무 추진절차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조정부장은 피청구인에게 조정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구한다.

청구내용이 조정대상인 경우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정절차, 조사방법, 조사기관 선정, 조사 및 중재일정 등을 확정하고 조정신청 수수료 납부요구 및 조사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선정된 조사기관에 조정신청서 사본을 통지하고 조사방법 조사대상,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조사기관 지정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시료의 제출과 조사·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조정부회의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정안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상담조정위원을 결정한다.

조정부는 조정을 위한 당사자 심리, 조사기관의 시험성적 등을 근거로 당사자 상담(분리 또는 합석), 화해권고 및 조정안 작성, 조정안 수정 및 화해권고를 한다.

그 결과로 합의 해결될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문 통지 및 품종보호 무효처분 및 생산판매 신고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붙임자료>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제도

1) 추진배경

그동안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없이 품종보호권자가 법원에 제소로 해결하였으나, 법적해결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의 추진배경은 중자산업법 개정('07.8)으로 침해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자위원회에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하여 상담·조사 및 품종의 유사성검정 등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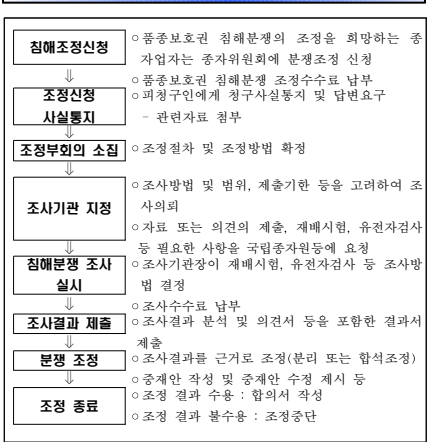
2) 관련법규

침해분쟁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자위원회 주요업무는 중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등록제도 등에 관한 농업수산물식품부장관의 자문, 중자업자 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법 제158조)

2) 중자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수산물식품부장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처리절차



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조사요령(국립종자원에규 제50호)

가) 조사담당관 지정, 운영

중자위원회의 침해분쟁 조정기능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에 식물별로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조사담당관의 역할은 품종보호권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침해분쟁사건 현지조사 및 침해사실 확인 기록 (증거확보), 조사 및 상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자위원회 요구시 출석하여 침해사실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분쟁조정에 협조 등이다.

나) 제배시험의 실시

침해분쟁 유사성 검정을 위해 제배시험을 실시한다.

제배시험담당관은 제배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식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정확한 조사하되, 제배시험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미흡할 경우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하며, 중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의 특성이 잘 발현될 시기에 중자위원회의뢰된 및 이해당사자에게 포장을 공개하여 침해의 진위성을 판단 및 분쟁조정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제배시험담당관은 유사성 검정을 위한 제배시험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배시험과장에게 보고하고, 제배시험과장은 유사성 검정을 위한 제배시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품종심사과장에게 통보한다. 품종심사과장은 유사성 검정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자위원회에 제출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제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법 제158조의 4 자료요청)

3) 중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회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봄(법 제158조의 5 출석의 요구)

4) 중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침해행위의 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법 제158조의 6 직권조정결정)

5)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중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158조의2), 조정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조정신청 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시행규칙 제127조의2)

제7강 품종성능관리제도

가. 개요

중자산업법에서는 국가농업발전 및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요한 식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능심사를 실시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토록 하고 이들 품종의 종자 생산공급 시에는 등재당시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품종의 성능이란 품종이 가지고 있는 우량성 및 우수성 등을 말하는데 주로 수량이나 품질, 내재해성 등이 해당된다.

나. 성능관리의 목적

식물의 품종이 일정수준 이상의 제배 및 이용상의 가치(VCU: Value for Cultivation and Use)를 유지하여 생산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성능이 불명한 종자의 판매를 제한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기하고 제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도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를 의무화하고 있고 EU내의 모든 국가는 식물별 각각의 種에 대해 품종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 목록에 있는 품종은 EU국가 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국가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등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목록에 등재되었거나 장래품종으로 지정된 품종이

전체 제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 품종성능관리의 절차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만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성능관리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심사기준 이상의 품종성능을 갖추고 있는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품종성능 유지책임자는 국내에서 그 품종의 성능과 함께 특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국가는 품종성능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련기록과 종자시료를 제출토록 하여 품종성능과 특성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라. 등재대상 식물의 범위

국민식생활과 직결되고 제배 및 유통물량이 많은 주요 식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료용은 제외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식물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의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품종목록 등재 신청 및 심사

3)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심사한 결과 당해 품종이 품종 성능의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의견서 제출기간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바.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공고 및 등재의 유효기간

1)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품종목록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며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이 연장신청에 의하여 연장된 때에도 그 사실을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종류, 품종명칭, 품종목록 등재유효기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 등이다.

2) 등재취소의 절차

품종목록의 등재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 신청인 또는 그 품종성능 유지책임자에게 취소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 또는 그 품종성능 유지책임자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에 관하여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게 된다. 보호품종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시킬 수 있으며, 원래 육성자가 이를 이유로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2)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제배 및 사용상의 가치가 없어 농민이 이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실효성을 잃어 버리게 되며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품종보다 개량된 우수 품종이 나왔을 때에는 과거의 우수한 품종목록 등재품종이라 하더라도 농민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상업적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유효기간은 등재일의 다음해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연장신청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010년 12월까지의 품종목록등재 신청품종은 총 637품종이며 이들 품종에 대한 성능심사결과 508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되었다.

표 5. 국가품종 목록등재 신청품종의 심사결과 및 등재현황

(2010. 12. 31.현재)								
구 분	기존등재	'98~'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합 계	신청	176	318	52	35	31	25	637
	등재	163	292	47	11	30	25	508
벼	신청	78	124	21	16	14	16	269
	등재	69	89	26	5	16	13	218
보리	신청	40	36	6	4	3	0	89
	등재	40	31	6	0	1	2	80
콩	신청	42	64	7	11	11	7	142
	등재	42	45	6	4	9	8	114
옥수수	신청	9	58	12	1	3	2	85
	등재	5	39	5	0	2	2	53
감자	신청	7	36	6	3	0	0	52
	등재	7	28	4	2	2	0	43

* 기존 등재는 구법(주요 농식물종자법)에 의하여 장려품종으로 등록되어 종자산업법 경과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것으로 본 품종수임.

3) 품종목록의 보존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동안에는 그 품종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보존하게 되는데 품종목록 등재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관련 서류, 품종목록 등재 관련서류, 품종목록 등재심사 및 품종성능유지를 위하여 실시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제배심사를 통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 품종목록에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신청서와 함께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적응지역, 제배 상 유의사항, 품종의 사진 및 시료,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국가는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성능이 식물별 품종성능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제배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할 경우에는 제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품종성능심사기준은 식물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정하는데 수량성, 품질, 병충해저항성, 가공성 등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곡류에 대한 성능심사 시 수량, 포장제배특성, 병 저항성 및 품질특성을 주요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1)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사유

품종목록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품종성능이 변화되어 당초의 품종 성능 심사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제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품종명칭이 품종명칭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품종등록이 취소된 때, 심사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기만하여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동일 품종이 2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때에는 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종은 품종목록의 등재를 취소하게 된다.

아. 품종목록등재 품종의 종자생산

종자산업법에서는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의 우량 종자생산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및 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생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종자업자가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및 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도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인 경우에는 당해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는 당해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수 없다.

가. 종자보증의 정의 및 대상

1) 종자보증의 정의 및 목적

종자산업법에서는 유통종자의 품질보증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확립하고, 민간 종자업자에게는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통한 경영 개선,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상품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자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자보증이란 어떤 종자가 당해 품종의 종자인지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채종 및 조제되었고, 적법한 품질기준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국가 또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종자의 유전적인 특성 및 품질(발아율 등)을 국가 또는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종자관리사가 보증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량한 종자가 유통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있다.

2) 포장 및 종자검사 관련 규정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고,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에 대하여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128조, 제130조)

○ 검사기준

종자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2010-133호(2010.12.16)]에 규정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기준』

○ 검사방법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24호)

3) 종자보증의 종류

○ 국가보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

○ 자체보증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보증

4) 종자보증의 대상

○ 국가보증의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제대상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을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는 공인종자검정가협회, 기타 농림수산식

나.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시기

구 분	검사회수	포 장 검 사	종 자 검 사
벼	1	유숙기~호숙기	8월중~9월상순 10. 1~익년 3. 30
보리, 밀	1	유숙기~황숙기	5월 중하순 7. 1~8. 30
콩	1	개화기	8월중~9월상순 11. 1~익년 3. 30
옥수수	1차	수출출원 1주일전·수출출원기·암출출원기	7월 중하순 11. 1~익년 3. 30
	2차	수확 1주일전	8월상~9월상순
감 자	분간자	1 유묘15cm 정도 자랐을때	6월 중하순 9. 10~10.30 춘기감급: 2.10~3.30
		2 개화기부터 낙화기사이	7월 중하순
	가을감자	1 유묘15cm정도 자랐을때	춘5월 상중순 추9월하~10월상 춘작 : 7.10~7.30 추작 : 11.20~12.10
		2 제1기 검사 후 15일경	춘5월하~6월상 추10월 중하순

다. 포장검사

1) 검사신청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03조에 의거 종자 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종자원)에 포장검사 희망일 10일전까지 포장검사 신청서에 농가별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2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개정(2008.1.31, 대통령령 제20575호)에 따라 정부보급종 종자의 보증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2009부터 시작)
- 포장검사 신청시 첨부서류
 - 포장의 위치도 (필지별 지번포시)
 - 해당 품종의 작물별 특성(기, 까락, 잎, 줄기, 화기, 모음 등)
 -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재종단계, 제종기관 등) 및 제배상황(단, 파종에 사용된 종자를 동일기관에서 검사하였을 경우는 제외)
- 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 생산계획, 생육상황, 기상개요, 전년도 포장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 앞그루 작물의 품종별 제배내역

품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는 국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

○ 자체보증의 대상

-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제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품종목록등제대상작물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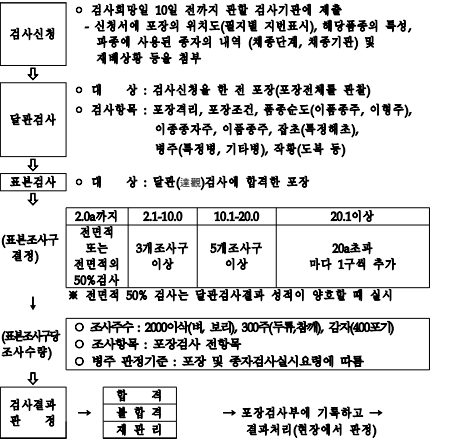
2) 포장검사 자료 제출

-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전년도 포장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기타
- 포장검사 기준에 전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는 2년간의 앞그루 작물에 대한 품종별 제배내역

3) 포장(圃場)확인

- 포장의 위치 및 제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 포장격리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생식물이나 잡초와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검사절차



지시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며, 제관리검사결과서는 포장검사부에 기록, 판정한 후 1차 포장검사부와 합철한다.

라. 종자검사

1) 검사신청

- 검사신청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실시요령에 따라 검사희망일 3일전 까지 종자검사 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서에는 품종별, 생산자별로 명세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에 게 제출.
-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일정을 별도 결정한 후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 실시 단, 발아 시험기간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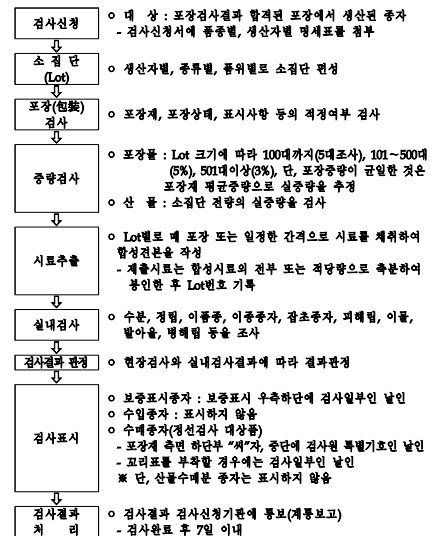
- 10 -

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

- 종자검사신청자는 검사시 현장에서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견본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解裝), 기타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신청자가 부담

- 11 -

2) 검사절차



- 12 -

마. 보증표시

1) 보증표시방법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는 보증종자와 무보증종자와의 구별을 쉽게 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사후에 종자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원인규명시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바탕색 : 흰색 대각선 : 보라색 바탕색 : 흰색 바탕색 : 흰색

- 13 -



[그림 2] 종자보증표시 견본

2) 보증의 실효

보증종자와 하더라도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자를 보증종자로 판매할 때는 보증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 보급을 목적으로 보증종자를 분할(分割)하여 포장할 때는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의 감독(監督)하에 실시하되 분할포장 전에 포장에 표시되었던 보증내용을 그대로 분할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할 포장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신고하여 승인(감독)하에 실시하고 분할 포장한 결과에 대하여는 승인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이를 확인한다.

- 14 -

제9장 종자의 유통

가. 종자업 등록

1) 종자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록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1인 이상의 종자관리사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절차는 종자업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위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종자업 등록에 관한 예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은 종자업 등록없이 종자의 생산·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화해, 사료작물, 목초작물, 특용작물, 뽕, 임목, 해조류의 경우에는 종자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종자업을 등록할 수 있다.

3)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자업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 ①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②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종자업등록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③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
 - ⑤ 종자산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하는 때에는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종자업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1)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종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하여 출원되어 공개된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제외한 품종에 대하여 품종을 생산·수입 판매코자 할 경우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수입 판매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2 -

<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현황 >

구분	신고 실적								합계
	기초신고	'98~'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4,501	21,902	1,729	2,576	1,892	1,316	1,610	2,036	97,568
식량작물	33	186	22	5	20	48	27	28	370
채소류	1,988	5,173	805	887	797	585	733	731	11,663
과수류	1,032	1,166	95	643	336	211	351	425	4,259
화훼류	-	13,956	684	973	608	414	405	774	17,823
특용작물	45	138	32	16	27	16	48	33	415
사료작물	-	319	53	25	60	22	35	32	545
비식류	1,403	937	32	26	38	19	11	13	2,479
기타	-	27	3	-	1	1	-	-	32
일련호합	-	-	3	1	5	-	-	-	9

2)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종자의 종자생산·보급

-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 작물의 종자는 종자보급이 판매요건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다.(등재의무와 조항 삭제)
-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부터 쓰이는 경우
 -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

보증받은 종자를 판매 보급하고자할 경우에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 사항으로는 분류번호, 증명, 품종명, Lot 번호, 발아율, 이음종율,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등이다

3)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보증을 하지 않은 비보증 종자는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표시 사항으로는 품종의 명칭, 종자의 무게 또는 입수, 종자의 생산년도 또는 포장년월, 종자의 발아율 및 그 발아보증시험,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 제배상 주의할 사항,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 생산 판매신고번호(품종생산판매신고품종의 경우) 등이다.

다. 종자의 수출입

1)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수출입 신고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종자의 량은 벼·보리·콩·옥수수 5kg, 감자는 50kg이다. 면제대상기관은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농업계 대학 또는 전문대학,

- 4 -

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관·농협·수협·축협·임협의 시험연구기관, 종자업자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다.

2)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보존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 할 수 있다.
-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기존 이상 포함
 - 수입된 종자의 예상하지 못한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등 기존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
 - 특정 병해충이 급격히 확산될 우려
 -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
 - 재래종종자 또는 국내의 유한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 유전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3) 수입적용성 시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배되지 않

라. 종자의 유통조사

1) 종자의 유통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불량 또는 불법종자에 대한 생산·판매중지 또는 수거

종자산업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거된 종자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장 보급종 생산 및 공급

4. 학습내용

가. 주요 작물 보급종 생산

1) 보급종 생산체계

있던 품종을 처음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적용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용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입적용성 시험을 받아야 하는 작물은 다음과 같다.

- 식량작물(13)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 채소(18)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양파,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 과수(삭제)
- 화훼(삭제)
- 버섯(11) :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표고, 잎새, 목이,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복령, 상황버섯
- 약용작물(22) :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백출, 사삼, 산약, 시호, 오가피,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텍사, 하수오, 향부자, 황근, 황기, 전철, 파극
- 목초 및 사료작물(29) : 오차드그라스, 톨레스큐, 티모시, 페리니얼라이그라스, 캔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 사

마. 유통종자의 분쟁

1) 대비시험 신청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분쟁의 대상종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와의 대비시험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 종자시료를 봉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으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비시험을 신청받은 장관은 대비시험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불량종자에 대한 보상청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을 종자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청구를 받은 종자업자는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보상청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에 의한 보상청구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종자업자가 보상청구에 불응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 료용 보리, 사료용 콩, 사료용 감자, 사료용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Sorghum×Sudan grass Hybrid) 수수교잡종(Sorghum×Sorghum Hybrid), 호밀,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헤어리벳치, 콤벳치, 자운영, 크림손로로버, 수단그라스 교잡종(Sudan grass×Sudan grass Hybrid)
- 인삼
 - 산림 및 조경용 : 제1호에서 제8호의 작물중 산림 및 조경용 등 타 용도로 개발된 품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국가품종목록대상 작물의 종자생산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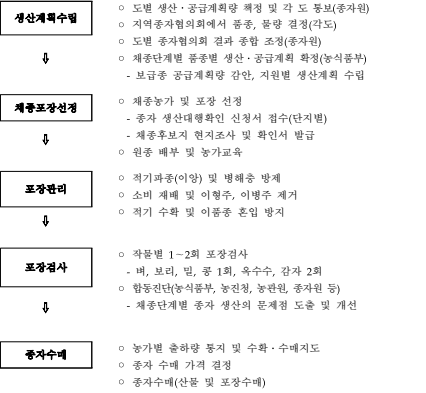
○ 국가품종목록등제대상작물 선정의 목적

종자산업법에 농업생산의 안정성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 관리를 위하여 작물 제배상 비중이 높은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5개 작물(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는 제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대하여 국가품종목록등제대상작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일정 품종성능기준에 도달한 품종만을 등제하고 생산·판매하도록하여 우량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품종목록등제의 유효기간은 등제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이며 연장신청(품종목록등제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 국가품종목록 등제 품종의 종자생산(법 제121조)

농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도지사,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농어민에게 그 생산을 대행할 수 있다.



○ 국가품종목록등에 품종의 종자생산 절차

(가) 포장검사(법 제 128조)

종자를 생산하고자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한다.

※ 종자생산 포장조건(종자산업법 제129조)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종자검사(법 제130조)

종자를 생산하고자하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포장검사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종자검사를 실시한 농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보증표지(법 제131조)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거마서류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 4 -

(가) 벼, 보리, 밀, 콩

채종재배는 일반재배와는 달리 수량증대가 목적이 아니므로 파종량을 제한하여 포기를 적게 하고 드물게 심게 하며 비료를 적게 주어 튼튼한 식물체에서 우량 종자가 생산되도록 한다.

또한 종자퇴화 방지를 위하여 지형지물 즉 하천, 제방, 논로, 수로 등을 경계로 일반재배 포장과 격리거리를 유지하여 타화수정을 최대한 방지하고, 병충해 대비 예방위주로 농약을 정기적으로 살포케 하여야 한다.

또한 혼종방지를 위하여 원종 배부 철저, 못자리 격리설치 및 공동이앙 등을 추진하고 출수 개화시부터 수확시까지 지속적으로(5~6회) 이형주, 변형주, 잡초 등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감 자

씨감자 채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로 특히 바이러스병 감염차단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바이러스병은 세계적으로 방제방법 및 방제농약이 개발되지 않아 본분을 매개, 전염시키는 진딧물방제에만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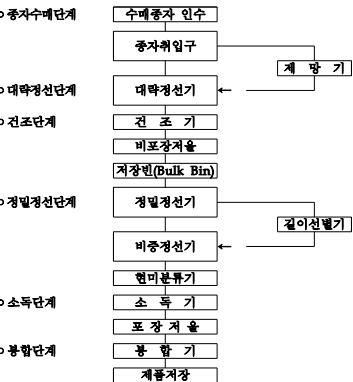
본분의 예방을 위하여 진딧물이 적은 고령지 및 해안가에서 채종하며 지속적인 농약살포 및 진딧물발생 예찰을 위하여 포장내에 황색수반을 설치, 진딧물 발생 동태를 파악하고 적정방제시기를 결정하여 공동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경 단위 식재로 이병주

- 7 -

나. 주요 보급종자의 공급

1) 종자정선 단계

종자정선 가공단계는 일반적으로 종자집수, 대략정선, 건조, 정밀정선, 소독, 포장 등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10

한다.

3) 보급종 생산요령

○ 작물별, 품종별 보급종 생산·공급계획 수립

도 단위 종자생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도생산 자도공급 원칙아래 품종의 특성, 재배농민의 기호도, 미질, 상품성, 과거 공급실적과 공급전망 등을 감안 품종별 수요물량을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종자원에 통보하면 종자원장은 각 도 품종별 공급희망량을 토대로 정선능력, 공급전망, 농안기금운용, 원종 확보량 등을 감안하여 종자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한다.

○ 원종 인수도

각도 원종장에서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 보급종을 생산하는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 국비를 지원받아 생산한 원종은 전량(불합격품 포함) 종자원에 인도하여야 하며, 종자원에서는 농식품부로 부터 확정된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따라 보급종을 생산·공급한다.

- 5 -

제거가 편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병주 제거는 발아 후 병징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까지 지속적으로 행한다.

피경 생육이 종료될 시기가 되면 바이러스 후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를 살포하여 수확전에 지상부를 고사시킨다.

(다) 옥수수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급되는 옥수수 품종은 종실사료용인 광평옥과 활옥계통이 있으나, 이들 전부가 교잡종으로서 교잡종 생산을 위하여 화분진(부계), 종자진(모계)의 원종을 별도 생산하여 각각 파종한다.

품종별로 원종의 개화기가 동일할 때에는 동일자 파종이 가능하나 서로 다를 때에는 개화지연일수 만큼 시차 파종을 하여야 한다.

파종방법은 화분진의 꽃가루량 및 확산에 따라 종자진 2줄, 화분진 1줄 또는 종자진 4줄, 화분진 2줄의 비율로 파종한다.

※ 자화수정의 방지를 위하여 종자진에서 생산되는 수꽃(개포리)은 화분이 비산하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화분진도 완전히 제거하여 수확시 혼종을 방지한다.

○ 종자수확 및 수매

종자의 수확은 생리적 성숙기에 행하는 것이 좋다. 조기 수확은 미숙립의 과다, 수확 지연은 등할미의 발생으로 발아율 저하 및 비정상표

- 8 -

(1) 제 1 단계

종자 집수단계로서 중량, 수분함량을 측정한 다음 창고에 일시 보관하거나 즉시 취입구에 투입, 대략정선에 들어간다.

(2) 제 2 단계

대략정선단계의 주요 기자재로는 제방기와 대략정선기가 있다. 제방기는 까막, 호명 등을 제거, 종자의 유동성과 파종성을 높이고 대략정선기는 종자에 혼입된 협잡물을 1차적으로 골라낸다.

(3) 제 3 단계

건조과정으로서 종자건조는 1회 건조시 3~4% 수분을 제거시켜야 하며, 건조온도는 43℃이상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4) 제 4 단계

종자 정선단계로서 정밀정선기, 비중정선기가 있는데 정밀정선기는 대략정선기에서 1차 선별한 종자를 다시 한번 선별하게 된다. 여기에서 1차 선별과정에서 미제거된 미숙립, 새립을 제거하고 비중정선기는 정상적인 품종보다 무거운 종자, 물, 흙미 등을 제거함은 물론 가벼운 종자를 제거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5) 제 5 단계

소독단계로서 종자전염 및 토양 전염병원균으로부터 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독 처리한다.

(6) 제 6 단계

포장단계로서 적정량의 종자를 자동포장계량기에 의해 계속하고 봉합기로 포장(봉합)하여 제품창고에 저장한다.

- 11 -

○ 채종포장의 조건

(가) 종자생산대행조건

해당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종자생산대행조건을 갖춘 포장 및 농가를 선정한다.(채종포장 운영관리지침 참조)

(나) 종자생산대행절차

종자생산대행조건에 적합한 지역내의 농가가 종자생산대행계약을 원할 시 종자원 지원장에게 종자생산대행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각 지원장은 단지구성의 약도와 지번지적대사 등 현지를 답사(기존단지의 경우 생략가능)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종자생산대행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씨감자의 경우 각종 병충해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윤작토록 하고, 전년도 재배작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단지규모

답작은 30ha, 전작은 20ha 범위를 기준으로 집단화하고 1개 단지에는 1개 품종 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 품종 이내로 할 수 있다. 단지는 가급적 대형화·집단화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 채종포장의 관리

발생을 초래한다.

벼의 경우 한 이삭에서 80%이상의 벼알이 황색으로 변한 시기, 출수기 후 일평균 적산온도가 1,000℃ 전후(품종에 따라 상이) 수확시 벼 알의 수분이 25%정도가 적당하다. 수분이 많으면 피해립의 발생이 많아 발아율이 저하되고 지경이 많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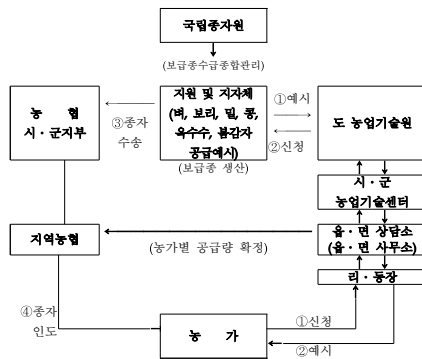
수매대상 종자는 포장(圃場)검사 및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수매한다. 수매방법은 포장수매(일반수매)와 산물수매로 구분하는데 포장수매는 종자생산농가가 수확, 탈곡, 건조 후 작물별 종자검사규격으로 조제하고 40kg 또는 대용량(500kg, 800kg 등)으로 일정한 규격의 중량으로 포장하여 수매하는 것을 말하며, 산물수매는 농가가 수확상태로 수매하는 방법인데 이는 생체중량을 검사규격 수분 15%로 환산하여 수매물량으로 한다.

수매자금은 농안기금(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을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비의 추가 지출 등을 감안, 작물(벼, 보리, 밀, 콩)에 따라 농안기금에서 15%~20% 생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수매하고 있다.

- 9 -

2) 보급종 예시·신청 및 공급

○ 체계도



- 12 -

작 물	예시 시한	기본신청 기간 (조정기간)	추가 신청기간	공급시기	판매대금 국고납입 과중기관
○ 벼 - 우선 신청·공급 - 일반신청	9.30 11.5	10.1~10.31. 11.6~12	1.3~1.31	1.10~3.30	5. 2
○ 보 리, 밀	7. 10	7.11~8.31 (8.28~8.31)	9.1.~9.14.	9.11~10.10	11. 2
○ 룡	1. 30	2.1~3.20 (3.18~3.20)	3.21.~4.20.	4.1~5.10	7. 2
○ 옥 수 수 - 우선 신청·공급 - 일반신청	9.18. 10.30	9.19~10.31 11.1~1.15. (1.13.~15.)	1.16~1.31	2.10~4.10	5. 2
○ 봄 감 자 - 조기제배용(추가) - 일반제배용(추가)	7. 30 10.30	8.1~8.31 (8.28~8.31) 11.1~1.10. (1.5~1.10)	9.1~9.14	10.1~10.25	11. 25

○ 보급예시

- 벼, 보리, 밀, 룡 종자는 해당 지원장이 옥수수, 봄감자는 해당 지자체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기관장이 시·도별, 품종별 공급계획량 또는 수매 확정량에 정선감모를 감안하여 예시한다.
-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종자원장이 예시한 물량을 기준으로 시·군별, 품종별 공급예시량을 배정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장은 읍면별로 예시한다. (종자원 → 도 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읍·면상당소 → 리·동 → 농가)
- 각 지원장은 지역종자협의회에서 결정·생산된 작물별 공급계획량을 전량 공급하기 위해 각 도 농업기술원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수 결정액을 농협 도 지역본부와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한다.

-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은 종자공급 대상자에게 전량 공급하고, 종자구·판 업무 대행계약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작물별 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동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은 종자대금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벼 우선공급

- 벼 우선공급 대상은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품종명칭을 표기하여 유통하는 업체 및 대량 수요처이다.
- 도별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기준으로 벼 우선공급 예시·신청 후 배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예시한다.
- 지원장은 벼 우선공급 대상으로부터 10.1. ~ 31. 신청을 받은 후 신청물량에 대해 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 후 업체별로 조정·배정한다. 단, 농림수산식품부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당해 연도 후보경영체 및 품종명칭을 표기하여 유통하는 업체의 신청물량은 전량 배정한다.
- 지원장은 우선공급 배정된 물량에 대해 해당 경영체로부터 계약 제배농업인별 공급량을 11.6. ~ 12.15. 동안 접수 받는다.

○ 종자 신청

- 종자 신청 접수기관장(농업인상당소장 또는 읍·면·동 행정기관장)은 읍·면동별 예시량 범위내에서 이·동장 또는 농가를 통하여 농가별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아야 한다.
- 각 도 농업기술원장(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은 농가의 신청 접수 전에 농가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품종특성 및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충분히 농가에 홍보하여야 하며 모작별, 지대별 알맞은 품종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받아야 한다.

○ 종자 공급시기

- 지원장은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신청량을 공급확정량으로 결정하되, 정선제수량이 공급계획량보다 적은 경우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할 수 있다.
- 공급기간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종자 판매가격

- 종자원장은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급종에 대한 정부공급가격과 대농민 판매가격을 통보한다.
- 종자원장과 농협중앙회장간에 체결된 종자 구·판업무 대행계약 및 보관 수송조작 도급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 수송조작

- 종자원 해당 지원장은 농협지역본부장과 판매지 시·군지부 창고 사정 등을 협의한 후 수송조작지시하고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한다.
- 수송기관은 종자를 수송하고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으로부터 종자인수 확인서를 받아 해당 지원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 종자 인수도

- 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검사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한다.
- 지원장은 수송기관에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출고요청서를 정선티 및 수송기관에 각각 1부씩 발부한다.
- 판매지 농협 시군 지부장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농가별 신청 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가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검사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도한다.

○ 판매대금의 납입

- 종자원 지원장은 작물별, 품종별 인도량이 확정된 후 시·군별